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117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서동주, 이준현, 이하나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유상민, 최하은

변론 종결2021. 9. 14.

판결 선고2021.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2019. 6. 5. 피고에 대하여 한 336,652,487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6,652,4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9. 5. 말경까지 D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006,418,453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원고 B은 800,046,640원 상당의 PVC 자재 등을 각 납품하였다.

나. D는 2019. 11. 11.경까지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D가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고, D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D는 2019. 6. 5. 피고에게 336,652,487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D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변제일인 2019. 6. 5. 당시 각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9. 6. 5.경 ① 적극재산으로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 강원 고성군 G 콘도 H호 중 1/10 지분, 양주시 I아파트 J호가 있었고, 그 가액이 약 706,800,000원(=위 E아파트 520,000,000원 + 위 콘도 700,000원,

위 I아파트 186,100,000원)인 사실, ② 소극재산으로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K은행에 대한 채무 3,263,000,000원, L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M보험에 대한 채무 6,000,000원, N카드에 대한 채무 8,000,000원, O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10,488,000,000원 등 합계 13,965,000,000원(3,263,00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원 + 8,000,000원 + 10,488,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의 가액 13,965,000,000원이 적극재산의 가액 706,8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 전 대표이사인 P의 동생이고, D의 감사이자 주주인 Q의 딸이며, 2019. 6. 1.경부터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변제를 위해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36,652,487원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19. 3. 11. D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4. 1. D로부터 90,000,000원을 반환받은 점, ② 피고는 2019. 4. 10. D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R아파트 S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T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240,971,92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9. 4. 25. 5,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③ D는 2019. 4. 1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2019. 6.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④ D는 2019. 4. 30. 피고에게 위 2019. 4. 10.자 90,000,000원과 2019. 4. 25.자 5,000,000원을 합한 95,000,000원을 반환한 점, ⑤ 피고는 2019. 5. 13.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9. 6. 5.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250,000,000원과 2019. 5. 13.자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36,652,487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변제행위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피고의 D에 대한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행위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변제 당시 D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신

판사강건우

판사김수연